

과학연구 종사자 지위에 관한 권고
(Recommendation on the Status of Scientific Researchers)

1974년 11월 20일 (제18차 유네스코 총회)

과학연구 종사자 지위에 관한 권고

1974년 10월 17일부터 11월 23일까지 파리에서 열린 제 18차 유네스코총회는,

그의 헌장 전문이 밝히고 있는 대로 세계 국민들간의 과학적 관계를 증진시킴으로서 유엔의 창설목적이 되며, 동 헌장이 선언하고 있는 인류의 공동복지와 국 제평화를 증진시키도록 도모한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모든 사람은 그가 속한 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가하고 따라서 과학의 진보와 그것이 가져다주는 혜택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1948년 10월 유엔총회가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그 중에서도 특히 제 27조 제1항의 규정을 고려하고,

다음 사항을 인정하여:

(가) 과학적 발견과 관계된 기술의 발전 및 그 응용은, 특히 과학과 과학적 방법을 적당하게 이용함으로써 인류에게 이익을 주고 세계긴장의 완화와 평화의 보 존을 가능케 한 큰 진보의 전망을 열어주나, 그러나 동시에 과학적 연구의 결과가 대규모의 파괴를 가져 올 전쟁을 준비시키기 위하는 따위에, 인류의 근본 이익에 상치되는 일에 사용되었을 경우, 또는 한 나라가 또 다른 나라를 착취하는데 이용되거나 이리하여 어쨌든 윤리적 또는 법적인 복잡한 문제 나 야기시키는 일에 사용되었을 경우, 그것은 차라리 위협을 가져다 줄 위험을 수반하며;

(나) 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절한 과학 및 기술정책, 즉 과학적 성과가 가져 올지도 모를 가능한 위험을 피하도록 고안되고 그러한 발견과 기술적 발전 및 그 응용이 내포하는 적극적인 전망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을 성

안하고 집행하는 기구를 창설하거나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다음 사항을 인정하여,

(가) 유능하고 훈련된 인재집단을 양성하는 것이 창의적인 탐구와 실험적 발전능력의 초석이며 세계 어디에서고 이룩된 탐구를 이용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사실;

(나) '학문적 자유'라는 말이 표현하듯이 과학적 성과, 가정 그리고 견해의 공개적인 교류는 과학적 과정에 근간을 이루며 과학적 성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가장 강력히 보장한다는 사실과;

(다) 탐구와 실험적 발전을 수행하기 위한 정확한 지원과 긴요한 설비의 필요성;

세계의 모든 곳에서 이러한 정책결정의 형세는 회원국들에게 중요성으로 짐중하고 있고, 광범한 국제적 기초 위에서 다양한 세계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과학과 기술의 가치가 증대하고 있다는 회원국들의 인정과; 그리하여 개별 국가의 발전도모와 함께 국제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본 권고의 부속문서에 명기된 정부간 주도권에 대해 유의하고; 이러한 경향은 회원국들이 적절한 과학과 기술 정책을 도입하고 수행함에 있어 확고한 행동을 취하게 만들 요인이라는 확신을 관찰하고,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인류와 그 환경에 대해 높은 책임감으로 과학연구와 실험적 발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유의 능력을 고무하고 지원하는 여건을 만드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권고하고,

이러한 여건 가운데 으뜸가는 것은 실지로 과학과 기술의 연구와 실험적 발전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공정한 지위를 확보해 주어야 하며 그러한 작업을 수행함에는 책임과 권리가 뒤따른다는 것을 당연히 고려할 것을 믿고,

과학연구는 특수한 작업조건에서 수행되며 과학연구 종사자들에게 그들의 작업, 그

들의 국가, 그리고 유엔의 목적, 세계의 이상에 대해 고도의 책임 있는 태도가 요구되며 따라서 이러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겐 상당한 지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하고,

최근의 정부간 그리고 과학연구 종사자와 일반여론의 분위기로 보아 총회로 하여금 소속과학자들에게 공정한 지위를 확보해 주기를 원하는 회원국 정부에게 원조를 주는 원칙을 성안할 적절한 시기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이 분야에서의 값있는 조치가 멀리는 이 분야의 종사자들에게 가까이는 과학연구 종사자들에게 이루어졌고, 특히 국제적인 제문서와 유엔헌장 전문의 문헌 및 본 권고 부속문서에서 지적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고,

이른바 '두뇌유출'로 알려진 과학연구 종사자들의 국적이탈현상이 지난날 큰 물의를 일으켰고, 그리하여 어떤 회원국들은 그것이 무시 못할 선입견으로 남아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개발도상국들의 긴급한 필요를 유의하고; 따라서 과학연구 종사자들은 그들의 봉사가 더욱 필요한 국가와 지역에서 봉사를 보다 힘차게 밀고 나아가야 할 이유가 생겼다는 것을 의식하고,

모든 국가에서 과학연구 종사자들의 지위에 관한 비슷한 문제가 일어나고, 이러한 문제들은 공동의 접근 방법의 채택을 요구하며 본 권고가 명시한 목적인 공동의 기준과 방법의 적용이 실제적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본 권고를 채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각기 다른 나라의 법률, 규정 및 관습의 큰 차이는 과학과 기술의 탐구작업 및 실험적 발전의 어떤 유형과 조직을 따르게 결정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모든 나라의 법과 법령에 명시되고 관습에 의하여 용인되며

본 권고 부속문서와 유엔헌장 전문에서 상세하게 지적된 문서 및 국제 문서 등에 포함된 기준과 권고에 과학연구 종사자들의 관심의 중심문제에 관련된 규율들을 첨가하여 보완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금번 총회 의제 26 과학연구 종사자들의 지위에 관한 제의를 검토한 끝에, 제 17차 총회에서 이 제안이 회원국들에게 권고하는 한 형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결정한 바,

1974년 11월 20일에 본 권고를 채택한다.

총회는 본 권고에서 제시한 표준과 원칙을 각기 다른 지역에서 적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법적 또는 그 외의 절차가 요구될지라도 다음의 조항을 적용하도록 회원국들에게 권고한다.

총회는 연구와 실험적 발전 및 그 성과의 적용을 지도할 책임 있는 정부 당국과 기구, 기업 그리고 조합체 안에 있는 과학연구 종사자들의 이익을 대표하고 도모하는 각종의 조직 및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에게 이 권고가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되도록 모든 회원국들에게 권고한다.

총회는 회원국들의 총회가 결정한 일자에 총회가 결정한 방식대로 회원국들이 본 권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권고한다.

I. 적용의 범위

1. 본 권고의 목적상:

(가)(1) '과학'이라는 말은 인류가 인과관계를 발견하고 극복하기 위하여 관찰한 현상에 대한 객관적 연구라는 점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활동하던 혹은 작게 크게 단체로 활동하던, 하나의 조직적인 기도를 하고, 인류로 하여금 때로 넓게는 수학의 상징이라고 표현된 조직적 반영과 개념화로 이룩된 지식조직의 결과로 생기는 협동적 모양으로 이끌며, 과학자체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자연과 인간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그 과정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기회를 주는 기획을 의미한다.

(2) '과학'이라는 표현은 그 자체에 이론적인 요인이 순리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실과 가설의 복합을 의미하며 거기에는 어느 정도 사회적 사실과 현상과 관련된 과학의 의미를 포함한다.

(나) '기술'이란 말은 상품과 책임의 개선 및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어떤 지식을 의미한다.

(다) (1) '과학연구'라는 표현은 연구와 실험 및 개념화 그리고 상기 제 1항 (가)(1) 및 제 1항 (가)(2) 에 기술된 바 과학적 지식의 시대를 포함한 이론조사를 의미한다.

(2) '실험적 발전'이란 표현은 실제로 응용할 수 있는 적용시험 및 정리의 과정을 의미한다.

(라) (1) '과학연구 종사자'라는 표현은 과학과 기술이라는 특수한 분야에서의 조사책임을 맡은 사람을 의미한다.

(2) 본 권고의 규정에 기초하여 각 회원국은 과학연구 종사자로 인정된 사람들(의 학위, 명예와 기능을 소유한)과 고려에 넣을 예외까지 포함하여 범 주의 표준을 결정한다.

(마) 과학연구 종사자와 관련해서 쓰는 '지위'라는 말은 첫째, 그들의 본래의 기능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평가한 수준 그리고 그것을 수행함에 있어서의 자격 평가의 수준, 둘째, 그들이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작업조건, 물질적 보조 와 도덕적 지원에 대한 권리에 입각한 입장을 의미한다.

2. 본 권고는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과학연구 종사자들에게 적용한다:

(가) 고용주들의 합법적 지위 및 그들이 작업하는 조직과 시설의 유형;

(나) 그들의 과학기술의 전문화 분야;

(다) 그들이 종사하는 과학연구와 실험적 발전의 근원적인 동기;

(라) 과학연구와 실험적 발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적용의 종류.

3. 과학연구와 실험적 발전에 관한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시간제로 하는 과학연구 종사자의 경우, 이 권고는 그들이 작업하는 시간에 한해서 적용되고 이러한 관계에서는 그들이 과학연구와 실험적 발전을 위한 활동에 종사했을 때만 적용한다.

II. 국가정책수립에 있어서 과학연구 종사자

4. 모든 회원국은 시민의 문화적, 물질적 복지 나아가서는 유엔의 이상과 목적을 증진하기 위하여 과학, 기술의 지식을 활용토록 노력해야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회원국은 과학 자체에 충분한 강조를 하면서 한편 국가목표의 성취를 위하여 과학연구와 실험적 발전노력을 직접 이끄는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을 실천에 옮기고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인적 자원, 시설 및 기계종류를 준비해야 한다. 과학과 기술에 관하여 그들이 채택한 정책에 의해서, 또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과학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해서, 그리고 과학연구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에 의해서, 회원국은 과학과 기술은 단독으로 수행될 성질의 행동양식이 아니라 국가가 더욱 인도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세우기 위하여 일치된 노력으로 이룩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5. 그들의 일반적인 국가계획 특히 과학기술에 관한 그들의 계획으로서 회원국은:

(가) 과학연구와 실험적 발전을 위해 마련되는 공공기금은 공공투자의 형식으로 처리하고, 그 상환은 기금의 대부분이 장기성이 되도록 하고;

(나) 반드시 써야 할 경비지출은 부단히 공개 여론에 회부하여 그 정당성을 확보하는 적당한 방법을 취하도록 한다.

6. 회원국은 그들의 국가적 관심만으로서 못 미칠 넓고 다양한 특수분야인 과학기술을 채용코자 하는 그들의 자각을 국제적 정책 또는 그러한 책략의 뜻으로 바꾸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것은 말하자면 세계평화의 보존 및 결핍의 제거와 같은 방대하고 복잡한 문제들이며, 공해의 감시 및 관리, 일기예보, 지진예보와 같이 국제적인 기초 위에서만 효과적으로 성취할 문제들이다.

7. 회원국은 과학연구 종사자들에게 국가의 과학연구 및 실험발전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는데 참여하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회원국의 이러한 절차는 과학연구 종사자들과 그들의 전문적 조직으로부터 충언과 보조를 기꺼이 여기는 국제기구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해야 한다.

8. 모든 회원국의 공적인 지원하에 과학연구와 실험적 발전을 성취함에 있어서 과학연구 종사자들은 공적인 책임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과학기술의 진보와 그들의 과업에 적당할 정도의 자율성을 원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에 적합한 절차를 세워야 한다. 과학연구 종사자들의 창조적 활동이란 과학 진보에 필요한 자율과 자유를 무엇보다도 존중하는 기초 위에 입각한 국가 과학정책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9. 이상의 목적으로 보나, 과학연구 종사자들의 이동의 자유 원칙을 존중하는 점에서 회원국은 과학연구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도덕적, 물질적 지원을 주는 특별조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반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관여한다:

(가) 회원국은 국가가 계속적으로 과학기술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자기 직업 좋은 점을 발견하고, 그들이 쌓은 경력이 합당한 전망과 공정한 안정신분을 주게 됨에 따라 과학연구와 실험적 발전에 확고한 자신을 갖는 재능있는 젊은 사람을 확보하며;

(나) 회원국의 시민 중에서 그 자신이나 또는 그를 둘러싼 동료들에 의해서 세계적인 과학기술사회의 중요한 인재가 될 수 있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을 과학연구 중

사자로서 부각시키고 그 성장을 고무하며;

(다) 대다수의 과학연구 종사자들과 과학연구 종사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나라에서 일할 수가 있으며, 그들이 해외에서 그들의 교육, 훈련 및 경험을 쌓았을 경우 그들이 원한다면 자국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는 상황을 고무한다.

III. 과학연구 종사자들의 교육과 훈련

10. 회원국은 효과적 과학연구는 과학 연구종사자들에게 고도의 도덕적, 지적 자질을 갖춘 성실과 성숙을 요청한다는 사실을 중히 여겨야 한다.

11. 회원국이 좋은 재능을 가진 과학연구 종사자들의 출현을 돕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 중에는:

(가) 모든 시민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견해, 국가적, 사회적 신분, 경제적 조건과 출생 등에 구별없이 과학연구 직업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받고자할 때 똑같은 기회를 가지며 모든 시민이 자격을 갖추어 갈 때 과학연구분야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확보하는 것이며;

(나) 과학연구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과 훈련에 있어 지역사회 봉사정신을 하나의 중대한 요소로서 권장하는 것이다.

12. 교육자의 필요하고도 적절한 독립과 준해서, 회원국은 이러한 정신을 함양하고자 하는 교육상의 선도를 지원해야 한다. 예컨대:

(가) 자연과학과 기술에 관한 방침과 교과과정에 있어서, 사회적 환경과학요소의 병합과 발전;

(나) 아래와 같은 인간의 자질과 성질을 고무하고 일깨우기 위한 교육적 기술의 이용과 발전:

- (1) 공평무사와 지적 성실;
- (2) 모든 인간적 함축성을 고려하여 여러 측면에서 상황이나 문제를 검토하는 능력;
- (3) 최초에는 기술적인 면으로 보이는 신지식을 탐구하는 문제에 있어서 시민적인 것과 윤리적 관계를 분별하는 숙련성;
- (4) 과학연구와 실험적 발전을 하는데 있어서 있기 쉬운 사회적 생태학적 결과에 대한 경각심;
- (5) 과학적 및 기술적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관계에 있는 외부세계와 교류를 갖는 자발성;

IV. 과학연구 종사자의 적성

13. 회원국은 과학연구 종사자들이 그들이 하는 일을 자기 나라 국민과 따라서 일반적인 의미로 인류에 대한 봉사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들의 직업에 대한 생각은 힘차게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회원국은 과학연구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와 태도에 있어서 이러한 폭 넓은 사회봉사정신으로 이룩한 과학연구와 실험적 발전을 격려하도록 노력한다.

과학연구 종사자들의 시민적, 윤리적 상황

14. 회원국은 과학연구 종사자들이 공공당국의 지원하에 책임과 권리를 갖는 조건을 고무하도록 촉구한다:

- (가) 그들이 관찰한 과학적 진리를 추구하고 해석하며 또 옹호함에 있어서 지적 자유의 정신으로 일을 하고;
- (나) 그들이 종사하는 계획의 목적에 대한 정의와 인도적, 사회적 및 생태학적으로 책임 있는 방법을 결단하는데 공헌하고;

(다) 계획이 내포한 인도적, 사회적 및 생태학적 가치에 대하여 그들 자신이 자유롭게 표현하고 따라서 최후의 수단으로 그들의 양심이 명한다면 이들 계획에 서 손을 댈 수 있고;

(라) 자국의 과학, 문화 및 교육의 체제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가목표의 성취, 자국 국민복지의 증진, 세계이상의 촉진, 그리고 유엔의 목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또는 건설적으로 공헌하고; 회원국은 그들이 과학연구 종사자들의 고용주로 행동하게 되었을 때, 상기의 (가)와 (라)에서 명시된 원칙을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실정이면 될 수 있는 대로 이를 명쾌하고 간단하게 상술한다.

15. 회원국은 과학연구 종사자들의 고용주들에게 제 14항에 포함된 권고를 취급하도록 강조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과학연구의 세계적 상황

16. 회원국은 과학연구 종사자들이 점점 그들이 종사하는 과학연구와 실험적 발전은 하나의 세계적 차원이라는 형세에 부딪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세계평화의 촉진, 협동과 이해 및 인류의 공통복지를 위해서 과학연구 종사자들이 그 형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17. 회원국은 총괄적으로 인류의 복지와 생존이 걸린 증진된 이해의 요인을 찾아 나선 과학연구 종사자들의 선도작업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지원을 조달한다.

18. 각 회원국은 그 자원이 세계의 과학기술 연구노력을 가능케 하는 만큼 충분한 기여를 가져오는 과업에 그들 자신이 과학연구 종사자들인 시민 특히 젊은 세대의 지식, 근면 및 이상주의를 동원하도록 한다. 회원국은 진정한 문화와 국가적인 주권의 통합에 기여할 사회, 경제적 발전 활동을 실행함에 있어서 과학연구 종사자들이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충고와 보조를 환영한다.

19. 과학기술지식의 모든 가능성이 즉시 인류의 이익에 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회원국은 과학연구 종사자들에게 제 16항, 제 17항, 제 18항에서 명시한 원칙에 유의하도록 강조한다.

V. 과학연구 종사자들의 성공의 조건

20. 회원국은:

(가) 일반공공의 관심은 과학연구 종사자들의 관심과 마치가지로 과학연구 종사자들이 과학연구와 실험적 발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이바지할 도덕적 지원과 물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있음을 명심하고;

(나) 이런 점에서 그들은 과학연구 종사자들의 고용주와 똑같이 지도적인 책임이 있으며 그러한 과학연구 종사자들의 고용주들에게 실례를 제시하는 것을 인정하고;

(다) 과학연구 종사자들의 모든 고용주들에게 과학연구 종사자들을 위한 만족할 만한 작업조건의 설비가 있는지에 대해서 깊은 주의를 경주하도록 특히 현재의 제 규정에 대해서 격려하고;

(라) 과학연구 종사자들이 그들의 작업조건에 만족하고 따라서 그들의 성, 언어, 연령, 종교, 그리고 국적에 차별이 없이 그들의 성과와 지위에 합당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한다.

적합한 경력개발 전망과 시설

21. 회원국은 포괄적인 국가인력정책을 더 많이 참작하여 과학연구 종사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고용정책을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가) 반드시 과학연구와 실험적 발전의 분야가 아니더라도 과학연구 종사자들로 하여금 적합한 경력개발의 전망과 시설을 제공해 주는 조건하에 직접 고용될 수 있는 준비를 확보하고, 이것을 비정부적인 고용주들에게 권장하고;

(나) 과학연구 종사자들이 관계된 일이란 그 작업의 성질로 보아, 억압에 얽매어져 있을 것이 아니라는 방향으로 과학연구와 실험적 발전에 대한 계획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다) 과학연구와 실험적 발전계획에 절대 필요한 부분으로서, 특히 고용생활기간이 일정한 계획일 경우, 과학연구 종사자들의 재고용과 재활용의 시설을 위해 필요한 기금의 준비를 고려하며, 따라서 이 기금이 불가능할 경우 적당한 보 상제를 준비 하고;

(라) 젊은 과학연구 종사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중요한 과학연구와 실험적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도전의 기회를 제공함.

항구적인 자체 재교육

22. 회원국은:

(가) 유사한 문제에 처한 여타 종사자들의 범주 내에서 과학연구 종사자 회의에 참석하고 자유롭게 도서관이나 공보기관에 출입하며 또 교육적 및 직업적 교과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이날까지 그들 자신과 또 그들이 관계된 주제를 계속 밀고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격려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른 과학 활동분야에 전환하기 위한 과학훈련을 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추 구하고;

(나) 그에 적합한 시설은 이 목적을 위하여 마련된 것임을 추구한다.

일반적 유동성과 시민 봉사

23. 회원국은 고도의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위한 포괄적 국가정책의 한 부분으로서 또는 정부와 고등교육기관 및 생산업체간에 행하여지는 과학연구와 실험적 발전의

봉사에 있어서 과학연구 종사자들의 교환과 유동성을 조장하고 장려하는 방법을 취한다.

24. 회원국은, 모든 정부기구는 과학연구 종사자들이 마련한 특수한 기술과 통찰력에 의해서 이득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회원국들은 그러한 계획이 어느 범위까지 그들 자신의 국가의 필요에 도움이 되는가를 결정해 보는 견지에서 특히 과학연구 종사자들을 위해 고안된 급여규모와 고용조건에 대해 회원국들이 얻은 경험을 조심성 있게 비교 검토함으로써 이득을 볼 수가 있다. 이 점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문제는 이러하다:

(가) 고도의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위한 포괄적인 국가정책의 구조 속에서 과학연구 종사자들을 최적으로 이용하는 것;

(나) 과학연구 종사자들이 그와 동등한 경험과 자격을 갖고 동등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려는 여타 종사자들과 비교하여 공평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과학연구 종사자들의 물질적 조건을 주기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모든 필요한 보증을 취한 준비절차에 대한 기대치;

(다) 공공연구기관에서 적당한 경험의 발전의 전망을 마련할 가능성 그리고 과학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자격 있는 종사자들에게 그들이 과학연구와 실험적 발전에 종사하는 지위에서 행정적 지위로 옮길 수 있는 취사선택권을 줄 필요성 등이다.

25. 회원국들은 과학과 기술이란 역으로 다른 국가활동의 분야와 긴밀한 접촉을 통해서 활기를 띠게 된다는 사실을 앞으로는 잘 이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회원국은 처음부터 유독 과학연구와 실험적 발전의 관계에서 성장함으로써 그들의 편향과 재주가 똑같은 행동방향으로만 진보하는 과학연구 종사자들을 낙담시키지 말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회원국은 반대로 과학연구 종사자들, 즉 그들의 본래부터의 과학연구와 실험적 발전훈련과 실질적으로 얻은 경험이 과학연구와 실험적 발전의 관리분야 및 과학기술정책이라는 넓은 분야에서만 그 가능성을 들어내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자기네들의 재주를 힘차게 신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데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세계과학기술회의에 참가

26. 회원국은 과학기술발전에 긴요한 과학연구 종사자들간의 발상과 정보의 담당작용을 세계적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촉진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연구 종사자들이 그들의 경험을 통하여 세계과학기술회의에 참석하고 해외여행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27. 나아가서 회원국은 모든 정부 및 준정부, 즉 그 속에 속한 권위로 인하여 과학연구와 실험적 발전이 이룩되도록 만든 모든 정부 및 준정부에게, 정기적으로 그들의 예산의 일부를 그러한 세계과학기술회의에의 참가를 위한 재원으로 기증하도록 주선한다.

과학연구 종사자들의 상당한 보상과 함께 책임있는 지위에의 접근

28. 회원국은 과학연구 종사자들이 그들의 고용상태에서 보다 책임 있는 지위로 올라가고 따라서 상당히 고가의 보상을 받도록 결정함에는 그들의 근자의 성과가 입증한 것과 같이 관계된 사람에 대한 공정하고 현실적인 능력평가와 함께 그들이 보여준 기술 및 그들이 획득한 표면적 또는 학문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본질적으로 공식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실제로 권장한다.

건강보호; 사회보장

29. (가) 회원국은 과학연구 종사자들의 고용주로서 적대적이요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종사자들을 보호하는 일과 관련된 국제적인 문서와 국내 규정에 따라서 가능한 과학연구 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 줌과 아울러, 어떤 말썽이 일고 있는 과학연구와 실험적 발전작업 결과에 영향을 입은 일반사람들까지 보호해야 할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을 수락한다. 그들은 동시에 과학시설을 관리함에는 적당한 안전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그들의 고용상태에서 필요한 안전절차를 교육하고, 위험에 빠진 사람들의 건강을 감시 보호하고, 특히 과학연구 종사자 자신

에 의하여 그들의 주의를 불러일으킨 새로운 위험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작업일수와 휴업일수는 합리적이고, 충분한 연가를 주는 것도 포함한다.

(나) 회원국은 모두 과학연구 종사자들의 고용주들에게 관례에 따라 합당한 절차를 밟도록 강조한다.

30. 회원국은 과학연구 종사자들이 그들의 연령, 성, 가족상황, 건강상태 그리고 그들이 수행하는 작업의 성격에 합당한 공평한 사회안전조치를 향유할 수 있는 규정을 갖도록 보장한다.

창조성의 증진, 평가, 표현, 인정

증진

31. 회원국은 과학 연구 종사자들의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창조적 성취를 고무하는데 적극 관여하도록 한다.

평가

32. 회원국은 고용상태의 과학연구 종사자들에 관하여:

(가) 과학연구 종사자들의 창조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들은 확고한 자세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일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인간적 능력을 측정하는 일은 원래부터 난점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며;

(나) 그들의 능력이 자극을 받아서 마땅한 과학연구 종사자들에게 격려하여 주도록 즉:

(1) 과학기술의 새로운 분야로 전환하든가;

(2) 과학연구와 실험적 발전으로부터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을 쌓은 그런 직업으로 또는 새로운 전후 관계에서 보다 좋게 효용될 것으로 입증된 인간 자질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3. 회원국은 관례대로 과학연구 종사자들의 여타 고용주들도 격려한다.

34. 창조성의 평가에 꼭 알맞는 요인으로서 회원국은 과학연구 종사자들이 다음과 같이 하도록 추구한다:

(가) 과학연구 종사자들은 바로 자신들이 과학기술의 전달과 교환에 의하여 일어난 지적인 자극과 함께 세계도처의 동료들로부터 던져진 질문과 비판 및 제의를 숨김없이 받아들이며;

(나) 과학연구 종사자들은 그들의 과학적 공적이 보증한 세계적인 갈채를 조용히 환영한다.

출판물에 의한 표현

35. 회원국은 과학연구 종사자들이 상을 받을 만한 명성을 얻는데 도움을 주고 따라서 일반적으로 과학, 기술 및 교육과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는 견지에서 그들이 획득한 성과의 출판을 격려 조장한다.

36. 이 목적을 위하여 회원국은 과학연구 종사자들의 과학기술에 관한 저술이 적절한 합법적 보호, 특히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확고히 하도록 한다.

37. 회원국은 과학연구 종사자 조직과의 상의하에 또 과학연구 종사자의 고용주를 격려하는 기준 관례의 문제로서, 그리고 그들 자신이 고용주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

이 되도록 추구한다:

(가) 과학연구 종사자는 자유로우며 그들의 연구 결과를 출판하도록 격려되는 것을 규범으로 여기며;

(나) 공공이해와 그들의 고용주 및 동료들의 권리와도 일치하는 그들의 발견을 출판함에 있어서 그들의 권리에 가해진 제약을 극소화하며;

(다) 이러한 제약을 가해 올만한 고용조건을 언급하는 저술은 될 수 있는대로 간결하게 표현하고;

(라) 동시에 과학연구 종사자가 이 항에서 지적된 제약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경우에 적용이 되었는가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절차, 그로 인해 그가 호 소라도 할 수 있는 그 절차를 분명히 할 것

인 정

38. 회원국은 과학연구 종사자들이 그들의 연구작업에서 드러난 창조적인 노력에 대하여 도덕적 지원이나 물질적 보상을 받는다는 점을 중히 여긴다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39. 따라서 회원국은:

(가) 다음 사항을 명심한다:

(1) 과학연구 종사자들의 공로를 인정하는 등급과 그들이 입증한 창조성에 대한 인정은 곧 취업 만족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2) 취업 만족은 과학연구를 성취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특히 그러한 성취는 또 창조적 요인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

(나) 그들의 입증된 창조적 노력에 대하여 합당한 처우를 하고 그 채용을 강조하고

적용한다.

40. 동시에 회원국은 다음의 표준적인 관례를 채택 또는 그 채택을 강조한다:

(가) 이들 종사자들이 하고 있는 과학연구와 실험적 발전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기술적 지식의 발견, 발명 및 향상에 관하여는 어떠한 권리가 그들에게 속하는 권리인가를 명확히 기술하고, 과학연구 종사자들의 고용 조건이 서면화된 규정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나) 과학연구 종사자들이 취업되기 전에 그들이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고용주들에 의하여 서면화된 규정에서 기술되도록 한다;

과학연구 종사자들의 고용의 상태와 조건을 밝힌 원문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의 합리적인 신축성

41. 회원국은 과학연구와 실험적 발전의 성취가 나날이 후퇴하지 않도록 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국은 과학연구 종사자들의 작업상황을 관리하는 기본이요, 고용의 조건을 명시한 모든 원문들을 과학기술의 요청에 부합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신축성으로 틀을 잡고 따라서 해석되도록 주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 신축성은 동등한 자격과 책임을 갖고 있는 여타 종사자들 보다 약조건 하에 있는 과학연구 종사자들의 상태를 이용하기 위해서 쓰여져서는 안된다.

과학연구 종사자들의 다양한 이익 진전

42. 회원국은 과학연구 종사자들이 본 권고의 부속문서에 목록화 되어있는 국제 문서가 밝힌 원칙에 자극을 받고 또 일반적인 근로자의 권리에 입각하여 그들의 개인적 또는 집단적 이익을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동조합과 같은 형체 혹은 직업연맹이나 지식인 결사 같은 것을 조직하려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합법적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과학연구 종사자들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우에 이들 기구들은 그러한 탐구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지지할 권리를 갖는다.

VI. 본 권고의 유용과 개발

43. 회원국은 활동상황이 본 권고의 범위와 목표 속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적 또는 국제적 조직, 특히 유네스코기구와 협조함으로써 과학연구 종사자들의 지위에 관한 그들의 자국 내에서의 행동을 확대하고 보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제기구 과학기술을 전담한 교육자를 대표하는 조직, 일반적인 고용주, 지식인 결사, 직업연맹과 과학연구 종사자들의 노동조합, 과학 저술가의 조직, 청년조직.

44. 회원국은 적절한 방법으로 상기한 조직체들을 지원해야 한다.

45. 회원국은 사회봉사정신에 입각하여 책임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고, 권리는 이를 향수하고, 본 권고에서 기술한 지위에의 인정은 획득하는 것으로 확신하면서, 과학연구 종사자를 대표하는 모든 기구와의 적극적 협조와 방심 않는 불침번이 되어야 한다.

VII. 최종 규정

46. 본 권고에서 고려한 것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유리한 지위를 이미 향수하고 있는 과학연구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그들의 조건이 기왕에 획득한 지위를 감소되어서는 안된다.